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30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307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526730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국

담당변호사 김민섭, 서고은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1. 4. 21.

판결 선고2021. 6. 2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526730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66,202,7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166,202,751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72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8,624,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폐업과 채무

C은 2014. 4. 1. 1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후 2014. 5. 31. 폐업하였는바, 그 무렵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4. 8. 25.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1	H(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가소84023)	2012. 3. 10.	11,450,000
2	I(서울서부지법 2013차전9683)	2013. 3. 19.	5,200,000
3	(주)J(서울서부지법 2013차전82360)	2014. 1. 4.	12,100,000
4	국세체납	2014. 4. 1.	100,000,000
5	K(주)(서울남부지법 2013가소91595)	2014. 4. 8.	2,463,300
6	(주)L(서울남부지법 2013가단74985)	2014. 4. 24.	44,000,000

1	H(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가소84023)	2012. 3. 10.	11,450,000
7	(주)M(서울동부지법 2013가단64527)	2014. 8. 6.	29,334,100
8	N(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2013가소8793)	2014. 12. 4.	5,000,000
9	(주)○(서울남부지법 2014가소538121)	2014. 12. 27.	13,200,000
10	산재고용보험료채납	2015. 2. 10.	11,419,000
11	(주)P(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3545)	2015. 9. 24.	195,900,000
12	산재고용보험료채납	2015. 11. 3.	7,482,000
합계	437,548,400		

다. 피고의 E에 대한 대여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2014. 7. 16.자 차용증

일금 200,000,000원

변제일 2014. 10. 16.

이자 월 2.5%(변제기일이 지나면 월 5%)

단, 고성군 F리조트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담보한다.

2014. 7. 29.자 차용증

일금 35,000,000원

변제일 2014. 10. 29.

이자 월 2.5%(변제기일 지나면 월 5%)

단, 고성군 F리조트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담보한다.

2014. 8. 6.자 차용증

일금 30,000,000원

변제일 2014. 11. 6.

이자 월 2.5%(변제기일이 지나면 월 5%)

단, 고성군 F리조트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담보한다.

라. C의 D에 대한 채권 등

1) C은 2013. 11.경 D에 대하여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경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8머33호로 위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 2018.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C에게 250,000,000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요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C의 D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2018. 1. 1.경부터 현재까지 C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으며, 이 사건 채권 외에 C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

C은 2019.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9년 제130호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액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4.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은 196,886,335원 [= 원금 68,624,439원 + 이자 128,261,896원{=68,624,439원×20%×(9년 +126/365일, 2011. 12. 17.~2021. 4. 21.)},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1. 25.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

2) 사행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금이

250,00,000원인 이 사건 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비롯하여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06,172,839원(= 68,624,439원 +437,548,400)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의 대표이사인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는 C이 이미 폐업을 하고 난 이후인 점, 피고는 C의 법인계좌가 아닌 E 개인계좌에 송금하였는바, E에 대한 송금내역을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당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이 196,886,335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6,202,75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취소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채권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166,202,7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66,202,751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재철

판사문현정

판사강지현

별지